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안)

안전번호 제2017 - 22 - 131호

안 건 명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민번호 :)

의 결 일 2017. 8. 8.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대상

서울지방경찰서는 피심인이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2017.2.2.)해 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조사(2017.3.6.~2017.6.5.)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피심인은 차량 소유자 의 동의 없이 (주)의 차량관제 서비스에 가입하여 ‘ ’ 벤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14. 6. 24.부터 2016. 10. 27.까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하였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5. 1.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7. 5. 19.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치정보법 제36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피심인은 차량 소유자 의 동의 없이 ‘ ’ 벤츠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IV. 시정조치 명령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인 300만 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300	600	1,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과태료의 가중·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 과태료를 부과 받는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감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가중·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과태료 가중	과태료 감경	최종 과태료
§15①	300만원	없음	없음	300만원
계				3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V.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